

인천상륙작전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134
----------	------

제출년월일 : 2014. 4.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6·25 전쟁 시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인천상륙작전의 전쟁사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계승·발전시키고, 희생자 추모 및 전쟁사 연구 등 인천상륙작전기념사업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인천상륙작전기념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라. 인천상륙작전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4쪽)

나. 비용추계서 (7쪽)

인천상륙작전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25 전쟁 시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인천상륙작전의 전쟁사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계승·발전시키고, 희생자 추모 및 전쟁사 연구 등 인천상륙작전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상륙작전의 전쟁사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 시장은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념사업
2. 희생자 추모사업
3. 인천상륙작전 관계 유물의 수집 및 전시
4. 인천상륙작전 전쟁사 연구 및 교육사업
5.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운영
6. 그 밖에 인천상륙작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관련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지방재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input type="checkbox"/>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7조(행정재산의관리위탁)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내용은 별지 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 세출 : 인천상륙작전기념사업 추진 및 운영비
 - 기념사업 행사 추진 및 관계유물 수집, 전시, 교육 등
 - 인천상륙작전기념사업 추진 사무국 1명 인건비
 - 인천상륙작전기념관 학예사 1명 인건비

2. 비용 추계결과

- 세출 : 2014년. 7~12월(76,000천원)
 - 기념사업 추진(30,000천원)
 - 기념사업 사무국 및 기념관 학예사 인건비(46,000천원)
- ※ 2015년도(152,000천원)

가. 추계의 전제

- 세출 : 연간 예산에 매년 5% 증액 반영

나. 추계 결과

- 세출 : 2014년 ~ 2018년 5개년 : 731,13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확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문화재과장 김 경 집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계
세입	부대시설 사용료	-	-	-	-	-	-
	소계	-	-	-	-	-	-
세출	기념사업비 및 인건비	76,000	152,000	159,600	167,580	175,950	731,130
	소계	76,000	152,000	159,600	167,580	175,950	731,130
재원 조달		76,000	152,000	159,600	167,580	175,950	731,130
국 비							
시비	소 계	76,000	152,000	159,600	167,580	175,950	731,130
	일반회계	76,000	152,000	159,600	167,580	175,950	731,13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